

##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5
----------	------

제출연월일: 2022. 3. 2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노점 점용허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권리·의무의 승계기준을 마련하여 노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노점 점용허가 대상자 선정 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 나.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상인이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노점을 직접 운영할 경우 노점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 다. 노점관리를 위한 행위의 금지에 환경오염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7조)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도로법」 제106조
  - 권리·의무의 승계 등

나.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8839호, 2022. 2. 28.)

라. 입법예고: 2022. 2. 28. ~ 3. 21.(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관리청인”을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구청장은 점용허가 시 울산광역시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는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이 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6.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상인이 해당 점포 앞에서 직접 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4조 제6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절차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노점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1개월”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점용장소 및 점용장소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오수의 무단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6. 주변 상인 또는 고객과의 마찰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노점 운영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점용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도로”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u>도로관리청인 도로</u>를 말한다.</p> <p>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관리하는 -----.</u></p> <p>3. (현행과 같음)</p> <p>4. “상인회”란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p>
<p>제4조(점용허가 등) ① ~ ⑤ (생 략)</p> <p>⑥ <u>구청장은 새로운 점용허가 시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다.</u></p>	<p>제4조(점용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구청장은 점용허가 시 울산광역시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는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u></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p>

26조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6.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상인이 해당 점포 앞에서 직접 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4조 제6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절차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점용허가 연장신청 제한)

제5조(점용허가 연장신청 제한) -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할수 없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제6조(노점 관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노점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점용허가기간 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신설>

-----  
-----  
-----  
----. 다만, 제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6조(노점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노점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

5. 점용장소 및 점용장소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오수의 무단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6. 주변 상인 또는 고객과의 마

<p><u>&lt;신 설&gt;</u></p> <p>제8조(허가취소) (생 략)</p> <p><u>&lt;신 설&gt;</u></p>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찰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u></p> <p><u>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u></p> <p>제8조(허가취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노점 운영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u></p> <p><u>&lt;삭 제&gt;</u></p>
---	--

## 근거법규

### □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 7. 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9.>

1.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허가 기간 및 노점관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 3. 작성자

- 소 속: 건설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구 희철
- 연락처: 052-290-3821